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1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양향자·이형석·김홍걸

이용빈 · 김병기 · 양정숙

이상헌 · 신정훈 · 오영환

주철현 · 강은미 · 이병훈

최종유 · 송갑석 · 서동용

유영덕 • 조오섭 • 민형배

송재호 의원(19인)

제안이유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지난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 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가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현재는 고령으로 시급한 치유가 필요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피해자 223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후유증 조사 결과, 76.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24.4%가 자살 시도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트라우마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란 국가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람,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등을 말함(안 제2조제2호).
- 다. 치유센터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 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8조).
- 라. 치유센터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들은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 마.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회계

부정이나 고의로 치유센터의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하며,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 바. 치유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3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치유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단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조 및 제29조).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 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폭력"이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 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나.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고문·상해·실종사 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다.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 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라.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군의문사사건 및 군대 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2.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폭력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국가폭력으로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사람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 다.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조사·지도·상담·치료·재활·지원·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법인격)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설립)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치유센터에 관하여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상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분원의 설치) 치유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재산·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 2.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개발
 - 3.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 4.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국제협력
 - 5. 그 밖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임원)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트라우마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1. 5·18기념재단·제주4·3평화재단 등 피해자 단체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 2. 보건복지부장관·국가보훈처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 3. 학술·의료·법률·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 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계부정이나 고의로 치유센터의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원장이 된다.
 -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기부금
 - 3. 그 밖의 수입금
-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센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치유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지도·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센터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센터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공된 자료는 제8조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치유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치유센터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설립 당시의 치유센터의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치유센터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 비용) 치유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4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치유센터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치유센터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